

수원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가단5650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조유화, 문세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선모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4. 20.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7. 27. 접수 제1191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윤성진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아파트 F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G

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위아스팔트섬글지붕 19층 아파트

1층 438.14m²

2층 432.68m²

3층 432.68m²

4층 428.76m²

5층 425.68m²

6층 425.68m²

7층 425.68m²

8층 425.68m²

9층 425.68m²

10층 425.68m²

11층 425.68m²

12층 425.68m²

13층 425.68m²

14층 425.68m²

15층 425.68m²

16층 425.68m²

17층 425.68m²

18층 425.68m²

19층 212.84m²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대 17864.77m²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2층 H호 철근콘크리트조 84.92m². 끝.

[별지2]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I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 사고조사보고서).

소외 C은 원고차량을 읍주·무면허 운전한 운전자이고, 피고는 소외 C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2. 손해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

가. 사고 경위

원고차량 운전자 소외 C은 2021. 6. 17. 16:00 경 충남 당진군 신평면 산교방조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이용하여 주행 중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방 도로포장공사로 인한 차량정체로 정차중인 #2차량(카니발)을 후미추돌하고, #2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3차량(모닝) 2차 추돌, #3차량은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고 #2차량이 #4차량(쏘나타) 3차 추돌, #4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5차량을 4차 추돌한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한편, 소외 C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읍주 및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물) 대인 J 외 4명, 대물 (차량번호 2 생략) 외 5건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지급공제금이 발생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물)에 대하여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공제금지급명세).

구 분	사고부담금 한도액	지급금액 (2021. 10. 18. 현재)	부담해야할 사고부담금	비 고
대인1	1천만원	6,800,000	6,800,000	
대인2	1억원	15,095,150	15,095,150	
대물(2천만원이하)	5백만원	20,000,000	5,000,000	
대물(2천만원초과)	5천만원	30,822,200	30,822,200	
합 계	1억6천5백만원	72,717,350	57,717,350	
기납부액			-4,200,000	
미납금액			53,517,350	납부안내 중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21. 6. 18.부터 2021. 8. 27. 까지 소외 C에게 유선으로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에 따른 사고부담금 대인 110,000,000원 및 대물 55,000,000원 합계 165,000,000원 중 그 당시까지의 지급공제금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함을 안내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소외 C에게 2021. 8. 3. 및 2021. 8. 26. 사고부담금 납부에 관한 공문 및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납부안내공문 및 내용증명).

이에 소외 C은 4,200,000원을 납부하였다가, 2021. 8. 31.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유선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경찰에 확인한 결과 소외 C은 2021. 9. 13. 기준 구속 수감 중인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사해행위 이전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원고차량을 음주·무면허 운전한 소외 C에 대하여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소외 C은 현재까지 사고부담금 합계 57,717,350원 중 4,200,000원만을 납부하였는바,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미납금액 53,517,350원(= 57,717,350원 - 4,200,000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해행위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처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17944 판결 등 참조).

소외 C은 2021. 6. 17.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고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외 C은 그 후 배우자인 피고에게 2021. 7. 19.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21. 7. 27. 부부가 거주하고 있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아파트 H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합니다).

소외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부가 거주하고 있기까지 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부동산이 소외 C의 유일한 재산인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외 C이 단지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2)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부동산의 가액을 넘지 아니함

K은행 아파트 시세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평균 가액은 3억 6,500만원입니다(갑 제6호증, K은행 아파트 시세조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L은 2020. 9. 2. 채권최고액을 각 146,400,000원, 117,6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이는 채권최고액에 불과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합계 264,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아파트 시세 3억 6,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아울러 위 각 근저당권계약은 사해행위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으므로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해의사의 존재

소외 C은 당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그 수익자가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마. 소 결

결국,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7. 27. 접수 제 1191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